트리븐 삼척 | 입주자 모집공고

TRIVN 트리븐 삼척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18. 포함) 총전용청약량이내로,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요정보

(별양문의 033-573-500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삼척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방법
없음	없음	없음	민간제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18.(금)	2025.07.28.(월)	2025.07.29.(화)	2025.07.30.(수)	2025.08.06.(수)	2025.08.19.(화)~2025.08.21.(목)	2025.08.26.(월)~2025.08.28.(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및 신청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대표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해당 주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 및 청약홈 주택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는 청약홈 홈페이지 이외에 중개사무소 등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청약홈 이외의 방문 접수나 사례금 등을 지불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기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5.06.30. 시행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해당지역 및 주택형별 접수일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접수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천 시흥시의 일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청약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약 제한 및 대출 규제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규제 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모집공고문 및 청약홈 주택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주택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천 시흥시의 일정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청약 제한 및 대출 규제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규제 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주택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청약홈 이외의 기관에서 청약 접수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아니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청약홈 이외의 기관에서 청약 접수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아니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외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외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그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매하는 경우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그 주택을 환매하여야 하는 것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그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그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전매하는 경우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그 주택을 환매하여야 하는 것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54